

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
육성·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·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디지털 전환의 확대로 데이터의 생산과 가공 등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·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타 산업 규정과 혼재되어 있음
-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: (前)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
· 지원 조례 → (後) 충청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-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(안 제5조)
- 데이터산업 육성 (안 제7조)
- 빅데이터의 활용 (안 제8조)
-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 설치 (안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14조)
-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발의배경

-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데이터와 인공지능(AI)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, 제조·금융·의료·교육·행정 등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. 데이터의 수집·분석·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산업은 AI 기술과 결합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

- 특히, 데이터 기반 혁신이 주요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됨에 따라, 국내외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·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. 이에 정부도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을 제정하여 데이터 기반 경제를 촉진하고 있으며,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임
- 충청북도 또한 데이터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, 스마트 제조, 바이오·헬스,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이를 위해 데이터의 생산·가공·유통을 촉진하고,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
- 그러나 현재 충청북도의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규정이 타 산업과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.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5조는 기존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, 데이터 분석

기술 동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
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의 취지에
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성이 인정됨

- 안 제7조는 본 조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육성 사업을 1호부터
10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산업
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됨
- 안 제8조는 교육·교통·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
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
마련한 것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
- 안 제9조는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하여 동조 제2항 각 호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 심의·자문이 필요
할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
율성 제고에 적절하다 판단됨
- 안 제14조는 산·학·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충청북도의
데이터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
규정으로 사료됨
- 안 제15조는 데이터산업의 기본 단위인 데이터를 생산·수집·
처리·분석·제공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정보보호를 위한
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

다. 상위법령 등 검토

-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르면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”고 되어있고,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각각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”,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”고 명시하고 있음
- 이에 상위법령에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, 개인정보 활용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,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의 개정은 타 산업과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 산업의 육성 근거 규정을 분리하고, 향후 체계적인 충청북도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- (타당성)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중복의 여건에 맞게 데이터 산업

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육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○ (종합의견)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데이터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필요성,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

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만의 선제적인 데이터 산업 발전과 산·학·연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육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술발전을 더욱 활성화하여 향후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